

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16. 12. 5.>

영화상영관 [] 등록 [] 변경등록 신청서

(앞쪽)

* 표시란은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등록 : 7일 변경 : 3일
신청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(대표자)	전화번호	
영화상영관의 명칭		상영물의 종류	
영화상영관 소재지		전화번호	
영화상영관 착공일	영화상영관 준공일	전체 관람자 정원	
전체 시설규모	부지면적	m ² , 연건축면적	m ² , 지하 층, 지상 층
*등록번호			*등록 연월일
*변경사항	변경 전		변경 후

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의 ([]등록, []변경등록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1. 시설설치내역서(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) 1부 2.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.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 부분의 사진 각 1매 4.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※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.	수수료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·시·군·구 조례가 정한 금액 ()원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1. 영화업(영화상영업) 신고 여부 2.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여부 3.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4. 건축물대장 등본	

유의사항

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영화상영관이 2개관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

신청인

처리기관 : 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담당 부서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